

충주시의회
제127회 1차 정례회
2008. 7. 24 (월)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보고서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의견청취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안 건 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비고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 7. 16	2008. 7. 16	2008. 7. 21	2008. 7. 21	교통 과장	
도시관리계획(관리 지역세분)안 의견 청취	"	"	"	"	지역 개 발과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조정 주차요금을 인하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차요금감면대상을 확대하며 공영주차장의 주차권을 제작·판매하여 공영주차장의 이용율을 제고

나.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의견청취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특성에 맞게 사용·관리될 수 있도록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계획·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세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보호자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승시 주차요금 감면 확

대 (안 제3조 제4항)

- 주차권의 제작 판매 (안 제3조 제6항)
- 공영주차장 급지 기준 변경 (안 별표1)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2)

나.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의견청취

- 충주시 관내 관리지역 385.655km²에 대하여
 - 보전관리지역은 201.814km²(52.3%)
 - 생산관리지역은 67.521km² (17.5%)
 - 계획관리지역은 116.32km² (30.2%)로 세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조례안을 보면 제3조 제4항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자가운 전차량 외에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못하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경감해 주도록 하는 것이고, 경차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조례안을 정비
- 제6항을 신설하여 기본요금 주차권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기본요금 30분당 1급지 500원, 2급지 300원에 해당하는 주차권을 제작하여 100매 이상 구입하는 경우 10퍼센트의 할인
- 조례안 제11조의 규정 중 제2항의 내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휴게소, 공중변소, 간이매점 등 외에 조례로 위임된 사업에 대해서는 세차장과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정함

- 조례안 제14조 단서의 개정내용은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규정으로
관리지역에서 건축되는 공장 및 창고시설에 대하여 [별표2]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관리지역에 입지되는 '공장'은 주차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나 '창고시설'은 대규모의 물류창고가 입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차를 유발

신고대상 단독건축물은 농촌지역에 전원주택의 용도로 건축하게 되는 경우로써 주차공간 확보는 건축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하므로 부설주차장 설치규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 조례안 [별표1] 에서는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조정하여 기존 1급지로 되어 있던 풍물시장 주변의 교현천공영주차장, 충의공영주차장을 2급지 주차장으로 지정하므로써 주차료를 낮추는 효과

나.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의견청취

- 종전 도시지역을 다룬 「도시계획법」과 비도시지역을 다룬 「국토이용관리법」이 이원화되어 국토의 난개발이라는 문제점을 나타내게 되면서 “난개발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양 법률을 통합한 현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부터 시행되게 되었고 이 법의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로 대별할 수 있음
- 첫째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합쳐 전국 국토관리체계를 일원화
- 두 번째로 비도시지역에도 개발행위허가제를 도입하여 개발절차와 기준을 개선
- 세 번째로 개발에 따른 학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기반시설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기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도 2006년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
또 개발밀도관리구역제,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친환경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본 관리지역을 세분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부칙 13조의 규정에 의거 올해 말까지 관리지역을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작업을 마쳐야 만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으며, 관리지역을 세분하지 않으면 보전관리지역으로 적용받아 많은 규제를 받음

- 관리지역은 도시지역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과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개발의 목적과 보전의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는 지역으로 관계인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곳

- 따라서 관리지역을 세분할 때는 기준과 원칙의 중심을 잡고 주변지역여건과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불편부당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5. 질의답변 요지

가.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질의 : 관리지역안에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는 단독주택도 면제 해줘야 함.
 풀물시장 주차료 면제는 조례에 규정해둬야 함
 공영주차장 선급에 대한 내용은 조례에 규정해야 함

- 답변 : 검토해 보겠음

나.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의견청취

- ▶ 질의 : 계획관리지역을 놀릴 용의가 있는지
- 답변 : 지침에 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3등급은 가능하면 계

획관리로 가도록 하겠음

- ▶ 질의 : 도심지역에서도 제약이 많은데, 농경지 농업용창고도 못 짓는데 대책은 있는지?

- 답변 : 생산녹지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음 다음 재정비 때 관리지역을 확대 하도록 하겠음

6. 심사결과

가.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수정가결

나.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의견청취
/ 의견서채택

붙임 : 1.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의견서 1부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 단서 중 “공장 및 창고시설”을 “공장 및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제외)”로 한다.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개정조례안	수정안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다만, 「지방 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택읍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설치 기준은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 기준의 90퍼센트를 적용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관리지역안에 건축되는 <u>공장 및 창고시설</u> 은 별표2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 …… ……. ……. ……. ……. ……. ……. ……. <u>공장 및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제외)</u> ……

의 견 서

□ 의 안 명 :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안 의견청취

□ 심사경과

- 의안번호 : 제 965 호
- 상정일자 : 2008 . 7. 21.
- 의결일자 : 2008 . 7. 21.
-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28조5항

□ 의 견

- 관리지역은 개발의 목적과 보전의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는 지역으로 관계인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곳임
- 따라서 관리지역을 세분할 때는 기준과 원칙의 중심을 잡고 주변지역여건과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하되 계획관리지역을 최대한 확대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계획하기 바람

2008. 7.

산업건설위원장